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12

발의연월일: 2021. 4. 20.

발 의 자:권명호·박대수·정진석

강민국 · 이철규 · 임이자

유창현 • 김형동 • 정운천

정희용 · 이종성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(국가유공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)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취득세 및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고, 이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은 일반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게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자 생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필수재임을 고려하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	제17조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
감면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감면) ①
장애인(제29조제4항에 따른 국	
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, 이하	
이 조에서 "장애인"이라 한다)	
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	
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「지	
방세법」 제125조제1항에 따른	
자동차세(이하"자동차세"라 한	
다) 중 어느 하나의 세목(稅目)	
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	
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	
자동차세를 각각 <u>2021년 12월</u>	<u>2024년 12월</u>
31일까지 면제한다.	<u> 31일-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9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	제29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
면) ① ~ ③ (생 략)	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	4
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	
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	
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	

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"국가유공자 등"이라 한다)이 보철용·생업활 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)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(稅目)에 대하 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1. ~ 4. (생 략)

⑤ (생략)

<u>2024년 12월 31일</u>	
1. ~ 4. (현행과 같음)	
⑤ (현행과 같음)	